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33 호

2003 년 8 월 22 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1호(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처분공시송달공고) -----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2호(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처분공시송달공고) ----- 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4호(보상협의공고(구월동1215-7번지어린이공원조성공사) ----- 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5호(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한공고·열람공고) ----- 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6호(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 1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7호(공사입찰공고(부평농장우회도로절개지보수공사) ----- 2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8호(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요령공고) -- 2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00호(무연고(행려)사망자공고) ----- 3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02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 3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1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위반한 아래의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3. 8.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3. 8. 16 ~ 2003. 8. 31(15일간)
2. 공시송달내용

납부의무자	성 명	(주)선경렌트카	주민(법인)등록 번호	110111-1730187
	주 소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3-305 태화빌딩305호		
과태료금액		금일십만원정(₩100,000)		
일 시		2003. 06. 24.		
납 부 기 한		2003. 07. 15.		
위 반 내 용		2002.10.28(16:35) 서울 경희궁앞 봉인탈락 단속		
관 련 법 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3. 유의사항

- 가. 납부기간까지 체납될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등)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 나. 체납처분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합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교통과 차량관리담당 ☎032-453-27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2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위반한 아래의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3. 8.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3. 8. 16 ~ 2003. 8. 31(15일간)
2. 공시송달내용

납부의무자	성 명	박 은 정	주민등록번호	760914-2
	주 소	부천시 원미구 상1동 571-6 백송마을@ 2722동 1805호		
과태료금액		금오만원정(₩50,000)		
일 시		2003. 06. 24.		
납 부 기 한		2003. 07. 15.		
위 반 내 용		2003.02.04(12:47) 부천상동 하나로약국앞 봉인탈락 단속		
관 련 법 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3. 유의사항

- 가. 납부기간까지 체납될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등)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 나. 체납처분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합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교통과 차량관리담당 ☎032-453-27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4호

보상협의공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구월동 1215-7번지(풍인연립주택) 일원 어린이공원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8.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협의기간 : 2003년 9월 20일한
 2.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정비과
 3. 보상의시기·방법 및 절차 : 개별 협의 체결(매매계약작성) 후 현금보상
 4. 보상내역 : “별첨참조”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7. 기타사항
-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수령 시 이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내역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및 구역	구조및규격	면적또는 수량	대지권	보상액(원)	간접보상액(원)	소유자	관계인
1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C동 1호 지하	세면벽돌슬래브	60.3㎡ 13.74㎡	1,978㎡중 58.79/2,405	50,700,000	별첨 참조	이태준	상병연(가동기)
2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C동 2호 지하	세면벽돌슬래브	60.3㎡ 13.74㎡	1,978㎡중 58.79/2,405	50,700,000	"	박경래	-
3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C동 3호 지하	세면벽돌슬래브	60.3㎡ 13.74㎡	1,978㎡중 58.79/2,405	50,700,000	"	유귀형	-
4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C동 4호 지하	세면벽돌슬래브	60.3㎡ 13.74㎡	1,978㎡중 58.79/2,405	50,700,000	"	김동용	웅탄농협합동조합(가입유) 웅진수산업협동조합(가입유) 인천시남동구(양유) 인천축산기업조합(새마을금고 (근적당권) 웅진수산업협동조합(근적당권) 김옥희(근적당권)
5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C동 5호 지하	세면벽돌슬래브	60.3㎡ 13.74㎡	1,978㎡중 58.79/2,405	49,600,000	"	나부전	-
6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C동 6호 지하	세면벽돌슬래브	60.3㎡ 13.74㎡	1,978㎡중 58.79/2,405	49,600,000	"	김옥자	-
7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C동 7호 지하	세면벽돌슬래브	60.3㎡ 13.74㎡	1,978㎡중 58.79/2,405	49,600,000	"	이영미	대한국조목재(근적당권) 이문정(가동기)
8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C동 8호 지하	세면벽돌슬래브	60.3㎡ 13.74㎡	1,978㎡중 58.79/2,405	49,600,000	"	백용관	-
9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D동 1호 지하	세면벽돌슬래브	60.3㎡ 13.74㎡	1,978㎡중 58.79/2,405	50,700,000	"	김기만	김노각(가동기)
10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D동 2호 지하	세면벽돌슬래브	60.3㎡ 13.74㎡	1,978㎡중 58.79/2,405	50,700,000	"	박철순	두연합계합(가입유)
11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D동 3호 지하	세면벽돌슬래브	60.3㎡ 13.74㎡	1,978㎡중 58.79/2,405	50,700,000	"	이순익(이인)	-
12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D동 4호 지하	세면벽돌슬래브	60.3㎡ 13.74㎡	1,978㎡중 58.79/2,405	50,700,000	"	김병철외3인	-
13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D동 5호 지하	세면벽돌슬래브	60.3㎡ 13.74㎡	1,978㎡중 58.79/2,405	49,600,000	"	문일남	-

14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D동 6호	세면벽돌슬래브	60.3㎡	1,978㎡중 58.79/2,405	49,600,000	별첨 참조	확충금	-
15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D동 7호	세면벽돌슬래브	60.3㎡	1,978㎡중 58.79/2,405	49,600,000	"	이남여	-
16	구월동 1215-7	연립주택 D동 8호	세면벽돌슬래브	60.3㎡	1,978㎡중 58.79/2,405	49,600,000	"	완계화	-
17	구월동 1215-7 (구지번 : 구월동 51-4, 51-5)	연립주택 D동 9호 (동기표시: 구월동 51-4 외 1필지 내제1종호)	세면벽돌슬래브	52.94㎡	1,978㎡중 58.79/2,405	46,566,000	"	진복자	-
		지상	목조스레트	3.6㎡				"	
18	구월동 1215-7 (구지번 : 구월동 51-4, 51-5)	연립주택 D동 10호 (동기표시: 구월동 51-4 외 1필지 내제다용10호)	세면벽돌슬래브	52.94㎡	1,978㎡중 58.79/2,405	46,566,000	"	이성우	해남도(가동기)

간접보상비 책정내역

- 구월동 1215-7 (풍인연립주택) 독점공원조성공사 -

1.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1) 건물주 거주 의 경우

○ 대 상 : 사업시행인가일 이전부터 당해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건물주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비 고
금액	2,827,200	3,348,000	4,355,800	5,068,800	5,314,600	5,431,200	5,952,200	

2) 세입자 주거 의 경우

○ 대 상 : 사업시행인가일 3월전부터 당해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비 고
금액	4,240,800	5,022,000	6,533,700	7,603,200	7,971,900	8,146,800	8,928,000	

2. 이사비 지급기준

○ 대 상 : 건물주 및 세입자

등 급	주택면적기준	이 사 비 지 급			지금액	비 고
		인부임	운반차량비	포 장 비		
다	49.5㎡이상	253,410	262,100	77,320	592,830	
라	66㎡ 이상	304,090	314,520	92,790	711,400	

3. 가옥주 이주정착금 지급기준

○ 대 상 : 사업시행인가일 이전부터 당해 주거용 건물에 실제거주하고 있는 가옥주

○ 금 액 : 10,000,000원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한공고·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열람 하오니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있는 경우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6	4	특수 도로	132	구월주공 아파트 2단지	대2-31	보행자 전용도로			

(2) 주차장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노외주차장	간석동233-14 번지외3필지	-	949.9	949.9		제2종일반 주거지역

나. 공간시설

○ 녹지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구월동 20번지	-	1,446	1,446		제2종일반 주거지역

다. 공공시설

○ 공공청사, 학교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공공청사	동사무소	구월동 23번지	-	1,013	1,013		제2종일반 주거지역
신설	5	공공청사	파출소	구월동 24번지	-	375	375		"
신설	6	학교	초등학교	구월동 24번지	-	11,440	11,440		"

2.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사), 남동구홈페이지 게재, 구보 게재,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3.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5)

5. 첨부 : 도면게재 생략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위한 입안(안)

= 간석4동 233-14번지의 3필지 =

1. 제안이유

- 간석4동 빌라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이면도로상의 무단주차로 인하여 이웃간 주차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주차난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상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2. 주요골자

- 공영주차장 건설현황
 - 면 적 : 949.9㎡
 - 주차면수 : 31면
 - 종 류 : 노외주차장 (1층 평면/ 아스콘 포장)
 - 소요예산 : 1,587,833 천원
 - 재 원 : 주차장특별회계(구)

3. 참고사항

- 간석오거리주변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신규 빌라 증축등으로 이면도로상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임.

4. 의결주문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주차장	간석동233-14번지의 3필지	-	949.9	949.9		

5. 지적현황

지 번	지목	면 적(m²)	소 유 자	비 고
계		949.9		
간석동 233-2	대	121.9	정성근	- 상가주택 - 158.34m² - 2층 건물
간석동 233-3	대	497.2	이기돈	- 현 기린유치원 - 연면적 373.56m² - 2층 건물
간석동 233-12	대	198.2	이기돈	- 현 기린유치원 정원 및 통로
간석동 233-14	대	132.6	김영술	- 단독주택 - 연면적 234.84m² - 2층 건물

6. 재원조달방안

○ 사업비 확보 :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구비)

구 분	소 요 예 산	사업비(천원)
계		1,587,833
보상비	○ 토지매입비 - 121.9m² X 565,000원 X 1.5 = 103,310천원 - 497.2m² X 567,000원 X 1.5 = 422,869천원 - 198.2m² X 567,000원 X 1.5 = 168,569천원 - 132.6m² X 565,000원 X 1.5 = 112,379천원 ○ 지장물보상 : 영업및지장물보상 1식 = 587,873천원	1,395,000
공사비	○ 공 사 비 : 31면 X 5,935,000원 ≒ 184,000천원	184,000
기 타	○ 실시 설계 : 184,000천원 X 4.08/100 = 7,508천원 ○ 기 타 : 184,000천원 X 0.72/100 = 1,325천원	8,833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6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8.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개발·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위반과태료를 2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 참조 : 민원지적과장 ☎453-27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의견수렴 기간 : 2003. 8. 21. ~ 2003. 9. 13.)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4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 “영제59조제2항”을 “영제134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영제59조제1항”을 “영제13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제33조의2제4항”을 “법제144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내지 제3호 및 별지 제5호 내지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200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4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위 반 행 위	부 과 기 준	관 련 법 규
1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취득 일로부터 아래의 기간(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심의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이 경과하는 경우 - 2년초과 2년6월이내 - 2년6월 초과	토지가격의 5/100 (한도액 : 2백5십만원) 토지가격의 10/100 (한도액 : 5백만원)	법제144조제2 항제2호
2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토지가격의 10/100 (한도액 : 5백만원)	법제144조제2 항제2호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부과 · 징수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 · 징수결정통지서

1. 귀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께서는 다음과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규정 및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대한과태료부과 · 징수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1.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 통지용)				과태료 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구청 통보용)				영수필 통지서 (개인 보관용)			
제	호	회계 년도	년도	제	호	회계 년도	년도	제	호	회계 년도	년도	제	호	회계 년도	년도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수입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수입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수입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수입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			납부장소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			납부장소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			납부장소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		
위 과태료는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과 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 에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시중은행·농협· 우체국 (인) 수 납 일부인				위의 금액을 영 수하였기에 통지합 니다. 년 월 일 시중은행·농협· 우체국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수납일 부인 세입징수관 귀하				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시중은행·농협· 우체국 (인) 수납일 부인 취급자 인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관		⑤ 납부통지서 번 호		
	⑥ 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 자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원
	⑥부과기관		⑦이의제기일자	

- 첨부 :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 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명 :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 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 조의2 제2항제6호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절 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제1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 반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견진술) 구청장은 영 제59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1호 의한 사전통지 서를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조(의견진술) 구청장은 영 제 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		

현행	개정안
제4조(과태료처분의 통지등) ① 구청장은 <u>영 제59조제1항의 규정</u> 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3호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과태료처분의 통지등) ① 구청장은 <u>영 제134조제1항의 규정</u> 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통지 ----- ----- ----- ----- ----- ----- ----- ----- ----- ② (생략)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u>법 제33조의2제4항</u> 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u>법 제144조제4항</u> 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 ----- ----- ----- ----- ----- ② (생략)

현행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1. (생략)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규정 및 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 - - - - ----- 3. (생략) 첨부 : 1.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1. (생략)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규정 및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 - - - - ----- 3. (생략) 첨부 : 1.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제 호</th> <th style="width: 35%;">회계년도</th> <th style="width: 50%;">년도</th> </tr> </thead> <tbody> <tr> <td>세입과목</td> <td>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 </td> <td></td> </tr> <tr> <td>납부의무자</td> <td> 성명 주소 </td> <td></td> </tr> <tr> <td>위반사항</td> <td colspan="2"></td> </tr> <tr> <td>납부기한</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r> <tr> <td>납부장소</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3"> 위 과태료는 국토이용관리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td> </tr> </tbody> </table>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위반사항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위 과태료는 국토이용관리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제 호</th> <th style="width: 35%;">회계년도</th> <th style="width: 50%;">년도</th> </tr> </thead> <tbody> <tr> <td>세입과목</td> <td>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 </td> <td></td> </tr> <tr> <td>납부의무자</td> <td> 성명 주소 </td> <td></td> </tr> <tr> <td>위반사항</td> <td colspan="2"></td> </tr> <tr> <td>납부기한</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r> <tr> <td>납부장소</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3"> 위 과태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td> </tr> </tbody> </table>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위반사항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위 과태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위반사항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위 과태료는 국토이용관리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위반사항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위 과태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③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부과기관				과 태 료 처분내역	④부과기관			
	⑤남부통지서 번호					⑤남부통지서 번호			
	⑥과태료금액					⑥과태료금액			
⑧과태료처 분사유					⑧과태료처 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 한 불복 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 한 불복 사유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 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 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신청일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 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일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제기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제기통보서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국토이용관리법제33조의2제5항과 관련입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 4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2.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 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 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 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 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 분내역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과태료처 분내역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의제기자	③주 소	의제기자	③주 소	
과 태 료	④고지일자	과 태 료	④고지일자	⑤과태료금액 원
처분내역	⑥부과기관	처분내역	⑥부과기관	⑦과제일자
첨부: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첨부: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7호

공사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34-1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공사개요 :

○ 토공

- 절취(인력) : 264.00m'

- 터파기 : 토사577.00m', 연암55.00m', 되메우기307.00m', 잔토(토사)525.00m'

○ 사면보호공

- ROCK-BOLT(랜덤볼트) : 96공

- 결착식 낙석방지망 : 1,406.00m'

- 녹생토 : 1,637.00m'

- 계단식 옹벽 : 55.00m

○ 배수공

- 도수로 : 77.50m

- U형측구 : 400.00m

- 산마루 측구 : 495.40m

○ 부대공 : 1식

마. 설계금액 : ₩1,000,720,000원(관급자재 85,190,000원 포함)

바.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두고 G2B(국가종합전
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토
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03. 8. 21(목) 09:00~2003. 9. 1(월) 14:00
- 나.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3. 8. 21(목) ~2003. 9. 1(월) [건설과]
-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정부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정부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3. 9. 1(월) 15:00
-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2002. 10. 2)]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2002. 10. 2)] 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집행후 낙찰하한가격/예정가격이 87.7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적격심사후 지체없이 결정 통보합니다.
-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의 제2조(평가기준)제6호「추정 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수행능력 평

가중 시공경험평가는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2000,2001,2002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 (발주기관의 관급·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915,530,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 제99호),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032-453-221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 8.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경 리 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8호

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요령공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8.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3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03년 8월 21일 ~ 9월 9일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각동사무소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3년 8월 21일 ~ 9월 9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 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각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⑤ 소재지및지번	(일련번호 :)		
	⑥ 지목			
	⑦ 실제이용상황			
의견 제출 내용	⑧ 의견가격	원/㎡		
	⑨ 의견제출사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기재요령 : ⑤ 난의 일련번호는 지가열람부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⑨ 의견제출사유는 대상토지의 지형지세 및 주변여건 등 의견가격을 제시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다.

※ 동일인이 여러필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대상토지와 의견제출항목에 대하여 별지로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00호

무연고(행려)사망자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행려)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동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본 적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처리방법
		주 소		안치장소		
황중순 (추정)	불 상	불 상	2003.0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11-4	- 패혈증 - 전신칸디다증	화 장
		불 상		부평세림병원		

□ 발생상황 : 상기 사망자는 2003. 01 .01 인천북부소방서 갈산파출소 주변에서 행려환자로 부평세림병원에 입원조치 되었으며, 퇴원 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조건부시설인 소망의집에서 보호를 받던중 패혈증 및 전신칸디다증으로 병사함

□ 인상착의 : 50대 중반, 곱슬머리, 키 158cm, 몸무게 50kg,

□ 공고기간 : 2003.08.20 ~ 2003.09.19 (1개월간)

□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

□ 납골기간 : 10년

□ 납골장소 : 인천광역시 장묘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산57-1 ☎ 032-522-4897)

□ 연 락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사회복지과 ☎ 032-453-2356

2003. 8.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02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대한주택공사 논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논현동 및 고잔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8. 22 ~ 2003. 9. 21(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3. 9. 21일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284)

2003. 8.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논현동	415-65	카센타 가추	브릭스레트 스레트	25.20 25.20	최동보	남동구 논현동 415-65	
2	논현동	산71	가옥 창고 보일러실 화장실	브릭스레트 목조선라이트 천막 목조함석	45.75 13.95 3.23 2.52	최복남	남동구 논현동 산71	
3	논현동	535	가옥 가옥 창고 창고 창고 창고(비닐하우스) 가추 개집 개집 염소막 장독대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목조스레트 브릭스레트 목조스레트 철골(VH) 목조선라이트 목재 목조스레트 철골천막 브릭시멘트	73.80 8.75 3.85 5.00 19.95 73.15 9.02 7.00 10.56 7.74 5.40	김종구	남동구 논현동 535	

